

「건축법 개정안」 관련 건설산업계 탄원

2015. 7. 28

- “건설안전”을 이유로 6월~2년 업무정지 부과는
초법적 「과잉입법」으로 「철회」되어야 합니다 -

대한건설협회

대한전문건설협회

한국주택협회

대한주택건설협회

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

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

한국건설기술인협회

건설공제조합

전문건설공제조합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

존경하는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!

어려운 사회·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, 아울러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국회 김상희의원께서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부실한 설계와 시공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설계자·시공자 등 건축참여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「건축법 개정안」을 발의('15.6.29, 의안번호 15820) 하였습니다.

건축참여자 책임 강화방안(안 제25조의2)으로, “건축법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및 재위반시 업무정지 2년, 건축법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업무정지 2년” 등 강한 처벌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어 우리 건설산업계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.

건축물 안전확보로 국민생명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,

법안대로 할 경우, 경미사항 등에까지 업무정지 강제부과에 따른 처벌납발 등으로 건축참여자는 “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 상태”에 놓이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위협받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

이러함에 그 정당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계로서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, 한발 물러서 그 법리를 따져 보아도 헌법상의 “과잉금지원칙”을 크게 위반하고 있어 “위헌논란”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법률적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우리 건설산업계는 건설업자 등을 사지로 모는 동 법안은 반드시 「철회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,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다소 극단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위원장님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

① 행위와 처벌간 균형 상실로 행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「과잉금지원칙」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

- 법안은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, 행위자의 과실·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한 차등부과의 여지를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6개월간, 2년간 업무정지 처하도록 하면서,
그것도 허가권자로 하여금 의무 부과토록 함으로써 행위와 처벌간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등 헌법상 「과잉금지원칙」(비례원칙)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사망사고에 대해 ‘건설산업기본법’, ‘건축사법’ 등 소관법률에서 처벌하고 있음에도 처벌강도 달리하여 처분함은 중복처벌이고, 타 법률을 무력화시켜 입법체계의 물각을 가져오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
 - ‘건설업자’(시공자)를 규율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제82조)에서는 ‘사망사고’ 발생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부과토록 하고, 시행령에서 인명피해정도에 따라 3개월~1년의 영업정지 부과
 - ‘설계자·감리자’를 규율하는 「건축사법」(제28조)에서는 ‘사망사고’ 발생시 ‘건축사사무소 등록말소’ 및 ‘소속건축사 1년 업무정지’ 부과
 - ‘감리자’(다중이용건축물)를 규율하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(제31조)에서는 ‘사망사고’ 발생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부과토록 하고, 시행령에서 12개월 영업정지 부과

② 「단순 범위반」 [6개월 개정안이 「10명 사망시」 (5개월 건설법) 보다 처벌 가혹하여 납득 곤란하고 입법체계상 용인될 수도 없습니다.]

- 사고·부실시공 등 특정결과 초래없는 「단순 범위반」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는 중대재해로 「10명 사망시」 (5개월 영업정지, 건설산업기본법) 보다 처벌 가혹하여 납득 어렵고,

위반유형·참작사유 등 고려없이 획일적·의무적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또한 헌법상 「과잉금지원칙」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
 - 법안대로라면 ‘산업안전보건법’을 위반 만 하더라도 ‘6개월’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는데, 동일법률인 ‘산업안전보건법’에 따른 중대재해로 10명 사망한 경우에도 ‘5개월’ 영업정지(건설산업기본법) 처분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입법입니다.

- 이에 법안은, 건설업자 등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‘법적 안정성’을 결여하고 있으며, 전국에 수백개 건설현장 두고 있는 사업자가 더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.

- 6개월, 나아가 2년 업무정지는 건설업자 등을 도산에까지 이르게 할 만큼의 과급력이 큰 것으로 「사형선고」나 다름없는 것입니다. 업무정지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업무정지 부과는 신중을 기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

③ 경미사항에까지 업무정지 부과함은 「파파라치」 만 양산 시킬 뿐,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
- 단순한 건축법 위반, 특히 ‘산업안전보건법령’(안전규정 무려 670개) 위반 등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업무정지를 부과한다면, 그 틈새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내 “파파라치” 만 성행하여 건설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,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으며, 이는 동 법안이 달성코자 하는 건축물 안전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.

④ 건설공사는 여러주체가 참여하여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하는 특수성이 있어, 안전관리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.

- 건설안전 확보에 건설업자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나, 건설공사는 제조업과 달리 원도급자·하도급자·장비업자·자재업자·건설근로자 등 많은주체가 참여하여 하나의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특수성이 있어 안전관리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우리사회가 건설업자 등에 책임을 물을 때에는 이러한 어려움도 함께 헤아려 주는 아량이 조금은 필요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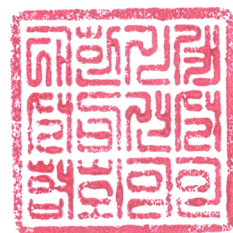
5 정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찾으면서, 동시에 그 주체를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적절치 아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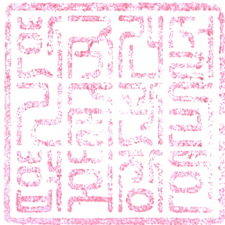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신규투자 및 경기회복 등 위해 건축규제 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건축투자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.

지난 7월 9일에는 대통령 주재 “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”에서 「건축투자 활성화 대책」을 발표하였고,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주체인 건설업자 등을 사지로 모는 처벌위주 정책을 펼치는 것은 투자활성화는 차치하고라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
- 이와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, 법안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우리 건설산업계는 위헌소송 제기 등 다소 극단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점 널리 헤량하시어 동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

참여기관 연명서

기 관 명		대표자 직위	성 명	직 인
		주 소		
대한 건설 협 회		회 장	최 삼 규	
		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·8층		
대한전문건설협회		회 장 직무대행	심 상 조	
		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8층		
한 국 주 택 협 회		회 장	박 창 민	
		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		
대한주택건설협회		회 장	김 문 경	
		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 4·5층		
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		회 장	이 상 일	
		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설비건설회관 7층		

기	관	명	대표자 직위		성	명	직	인
			주 소					
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			회 장	노 진 명				
			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					
한국건설기술인협회			회 장	김 정 중				
			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					
건 설 공 제 조 합			이사장	정 완 대				
			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					
전문건설공제조합			이사장	이 원 익				
			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					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			이사장	김 기 석				
			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설비건설회관					